

# 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

현재 관계법 제·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## 1.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(농림부 여성정책과 ☎02-500-1605)

- 2006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'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'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됩니다.
  - 이에 따라 축산인,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(소 70두, 돼지 1,000두, 가금 30,000수 등)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.
  - 또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.
    - ※ '06 연령별 지원단가(1인/월)
      - 보육료(보육시설) : 0세 155천원, 1세 154, 2세 127, 3-4세 79, 5세 158
      - 교육비(유치원) : (3-4세) 국공립 28천원, 사립 79 (5세) 국공립 56, 사립 158
-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## 2.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(농림부 여성정책과 ☎02-500-1605)

- 2006년 1월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.
  -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 등의 여성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,
  - 지원금액은 만0-1세 77천원, 2세 63천원, 3-4세 40천원, 5세 79천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.



-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,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3.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를,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 (농림부 여성정책과 (☎02-500-1607))

- 2006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,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「취약농가 인력지원」사업이 82개 시·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.
  - 영농도우미는 65세 미만,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 사고(농작업, 농기계, 교통사고 등)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, 도우미 임금의 70%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.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역농협(농협문화복지센터)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-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편조손가정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,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됩니다.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농가를 파악하여 도우미를 연계 지원하게 됩니다.
-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,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'인력지원단'을 구성·운영합니다.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일손을 대행해 줄 도우미 역할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(농림부 농지과 (☎02-500-1674))

-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,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.1.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.
  - (현행)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(양돈·양계 3ha, 기타 1ha),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% 부과
  - (개선)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 구분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,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(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% 부과)
-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,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.

## 5.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 (농림부 농촌사회과(☎02-500-2082))

-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%에서 50%로 확대합니다.
  - 읍면지역과 시지역중 녹지지역, 특별시·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'04년 22%에서 30%로, '05년 30%에서 40%로 확대한데 이어 '06년부터는 50%로 추가 확대 실시
    - ('03) 22% → ('04) 30 → ('05) 40 → ('06이후) 50

## 6. 축산물의 표시기준 (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(☎031-467-1961))

- 2005.9.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-10호 ; 2005.9.23)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,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내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
  -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[별표1. 1. 가. (8). (나)]
    -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
  -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[별표1. 1. 가. (2). (나)]
    - 식육의 종류(예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)와 부위명(안심, 목심, 앞다리 등)의 표시의무화
  -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[별표1. 1. 가. (11). (나)]
    -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
    -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“조사처리된 ○○○”으로 표시
  -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[별표1. 2. 가]
    -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
    -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
  - 유가공품의 개별표시[별표1. 2. 나]
    -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당 함유됨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
    -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
-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.1.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,
  - ※ 예외 : 주표시면이 30cm<sup>2</sup>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. 총 중량비율이 5% 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
  - 소시지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.[별표1 제1호 가목 (8) (가)의 규정, 제1호 가목 (10) (가) 1) 및 2)]

